

대구예술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

(제정 2011.05.24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대구예술대학교 부설 스포츠과학연구소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위치) 본 연구소는 대구예술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 (사업)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각종 학술 연구사업 추진
2. 정부, 민간 기관의 연구프로젝트 수행
3. 예·체능 각 분야에 대한 외부지원 연구
4. 논문집, 연구보고서, 연구자료 등의 발행
5. 국제 및 국내 규모의 체육활동 지원 및 봉사
6. 산학연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
7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조직

제5조 (임원) 연구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연구소장
- ② 전임연구원
- ③ 연구원
- ④ 조교

제6조 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은 우리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 (전임연구원) ① 전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제반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.

제8조 (연구원)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소의 연구과제 수행 시 필요에 따라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
제9조 (조교)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10조 (위원회 설치) 연구소의 운영, 정책,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1조 (위원회 구성) ①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, 전임연구원은 위원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및 해산한다.

제12조 (위원회 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5. 주요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4 장 회계

제14조 (재정) ①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연구소장이 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